

울산광역시 중구 구청,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5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18. 8. 7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가. 찾아가는 상담 및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관련하여 동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추진 지침에 따라 복지허브화를 시행하는 동 주민센터의 명칭 변경사항 반영
- 나. 주민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이 전체 동(현재 3개동 → 13개동)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10개동 “주민센터” 명칭을 “행정복지센터”로 변경

2. 주요내용

- 조례 중 “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”를 “동 행정복지센터”로 변경
 - 안 제명, 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2조 관련 별표안

3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조
 - ※ 행정안전부 읍면동 사무소(주민센터) 명칭변경 추진지침
 -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-1058(2016.3.17.)호 및 2481(2016.7.8.)호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: 개선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: 2018. 3. 19. ~ 4. 9.(의견없음)